

TM 전자서명 표준안

2025. 02. 20.

MG손해보험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계약내용확인)



(무)원더풀 51슬림 종합보험(24.04)(계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2244S)
청약번호 : RQ2588380363

계약정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2025-02-11 ~ 2082-02-11
보험료	40,340원
계약자	테스*(820112-2*****)
피보험자	테스*(820112-2*****)
보험기간	100세
납입주기	월납
납입기간	20년

다음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전화 : 1588-5959

© MG NON-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 RESERVED

[TOP](#)



(무)원더풀 51슬림 종합보험(24.04)(계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2244S)
청약번호 : RQ2588380363

계약정보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상자	가입담보	
테스*	일반상해사망보험금(맞춤건강고지)	1억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맞춤건강고지)	3,000만원

다음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전화 : 1588-5959

© MG NON-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 RESERVED

[TOP](#)



◆ 파일 다운로드 **[필수]**

약관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 5px; border: 1px solid #ccc; display: inline-block;"> 다운로드 </div>
청약서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 5px; border: 1px solid #ccc; display: inline-block;"> 다운로드 </div>
모집인 확인서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 5px; border: 1px solid #ccc; display: inline-block;"> 다운로드 </div>

이전

다음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전화 : 1588-5959

© MG NON-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 RESERVED

[TOP](#)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청약서류 미리보기)

휴대폰 전자서명

1 전체 65 -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 작성에 대한 사전동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 작성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에 따라 전자서명 및 이에 의해 서명에 의한 서명 및 기명날인요건은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상품명 : 조식미음 1년형 보험(보험금:24,044)(해약환급금:지급금(납입 후50%)) (22445) 청약번호 : RQ250890098

고객님의 위 청약사항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권명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뒤 자필로 경자 기명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전자문서) 작성결과 확인하세요!

-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 작성 전 대리서명 및 자기부인 방식을 위한 본인여부 확인
- 2)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 3) 전자문서로 제공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전자서명
- 4)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보험계약료 확인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의 효력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 작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은 **서면**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42조의2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담당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험업법 제42조의2 (해약환급금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설명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상황, 보살핌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한 날인,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후, 단리타이어 의무,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기 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기명날인 제42조의2 (설명의무 등 중요사항 등)
 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② 보험계약 체결 제42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한 날인,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후, 단리타이어 의무,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기 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전자서명법」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한 날인,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후, 단리타이어 의무,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기 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자서명 제공(250890098)
 2. 「전자서명법」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이에 의해 서명에 의한 서명 및 기명날인요건은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3.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료의 계약과 권리 관련 사항 확인하세요!

- 1)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부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관련부분을 요율, 수납액, 보험료는 몇만원, 납입부수, 5월말까지 이내에 보험계약료에 대해 계약서 부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숙독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보험계약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후 청약서 홈페이지(<http://www.mginsure.com>)에서 청약문의, 계약의리내 및 상담할 필요는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성명	서명
	테스트	

작성일자 : 2025년 02월 11일

휴대폰 전자서명

2 전체 65 - +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테스트 고객님께 드리는 행복설명서

부: 현대금융 서비스팀 (보험금:24,044)(해약환급금:지급금(납입 후50%)) (22445)

계 약 자 : 테스트님
 피 보 험 자 : 테스트님 (보험나이 변경일 : 내년 7월 12일)

소 속	전략영업센터
연락처	(영)영주노년동기금 민부금상내보험(테러가소)
전화번호	02-3788-2532
휴대전화	010-9897-1511
청약번호	RQ-250890098
보 험 료	40,340원
합입후보험료	40,340원
각 상 일	2025년 02월 11일

※ 본 행복설명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자서명

65 전체 65 - +

보험계약 주요내용 확인 이행 확인서

MG손해보험주식회사(주출) 청약번호 RQ25-88380363 계약자 테스트

<계약체결시 중요사항 확인>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확인내용	확인일시
중요제시	금융상품판매대리·송계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확인하였습니까? 금융상품판매자가 법인·보험계약인 경우 사업장(인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시된 대리인정보를 꼭 확인하고, 개인·보험계약인 경우는 보험계약서 등록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사자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보험료 고지외부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 받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해당 보험회사와 상품이 맞는지 또는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서의 설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제소유자확인	본 상품 계약자는 본 계약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실제소유자의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항으로 실제소유자란 계약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개자의 중개 목적을 보는 제한을 포함합니다).	
전통통장 지인형 이통수단인 상시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전통통장 지인형 이통수단인 상시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전통통장 지인형 이통수단인 상시적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행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 강요인 또는 고충약자가 사용하는 전통통장계, 전통스마트 폰, 은행인간 및 편의수단에 관한 법률(상·보통지이며 보도통통(테러)고지·통지외부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 받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해당 보험회사와 상품이 맞는지 또는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서의 설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전통스마트 폰은 제외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수익자 또는 유언자 사망자의 보험금의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을 은행보통입회 또는 은행보통입회통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서비스비	모집자의 경력, 재직이력, 통장관련내역, 보험계약유지등 총 주요정보는 이클립서비스비(www.mginsure.com) 홈페이지에서 고부연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확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성명	년	월	일
보험계약자 (테러가소)	테스트			

MG손해보험
 119 고객센터 1588-9899 www.mginsure.com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상품주요확인 및 청약서류 입력)

휴대폰 전자서명

모집인 설명 여부 확인 [필수]

모집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확인하였습니까?
 * 금융상품판매자가 법인_보험대리점인 경우는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에 게시된 '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고, 개인_보험설계사인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예 아니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동의 [필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전자문서) 작성절차 확인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효력 확인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계약자 권리에 관한 사항 확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필수]

약관 및 증권수령방법 모바일 우편

해외 납세자 확인 미해당

증표제시 확인완료

보험모집종사자 권한에 관한 사항 확인완료

실제소유자확인 확인완료

전통유통 개인형 이동수단의 상시적 이용에 관한사항 확인완료

보험가입내역 조회 확인완료

이클린보험서비스 확인완료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증표제시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확인하였습니까? 금융상품판매자가 법인_보험대리점인 경우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에 게시된 '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고, 개인_보험설계사인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 [필수]

귀하께서는 (타사포함) '현재 유지 중' 이거나 '6개월 이내'에 소멸 예정인 계약이 있습니까?
 아니오,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 [필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완료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완료

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완료

상품소개 등을 위한 선택동의 [선택]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체동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완료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확인 [필수]

계약자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에 대해 을 들었습니다.
 무사고고객 계약전환은 신청기한 내에 한 계약자에 한해서 회사의 승낙으로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전 시 알릴의무 위반효과(전환 후 계약의 ,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액 등의 , 연체 시 보험금의)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기 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사항 수령 확인 [필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등과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고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구성 화면 (상품주요확인 및 청약서류 입력)

◆ 상품설명 주요내용 확인서 [필수]

- 보험 공통 확인사항 확인
- 상품 특성 : 무/저 해약환급형 상품 확인
- 상품 특성 : 순수보장성 상품 확인

◆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 [필수]

- 보험모집인 어가조(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류 수령 확인 [필수]

- 보험모집인 어가조으로부터 계약서류(청약서부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지체없이 제공받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금융정보취약계층의 설명에 대한 계약자 확인 [선택]

- 금융정보 취약계층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 우선 설명
 만65세이상 은퇴자 주부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요청 고객

◆ 방문판매 모범규준 준수관련 계약자 확인

- [필수] 본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미리 안내받았습니다.
 - ①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 ②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 ③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④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해당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 본 확인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방문판매 모범규준 준수관련 계약자 확인

- [필수] 본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미리 안내받았습니다.
 - ①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 ②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 ③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④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해당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 본 확인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선택] 본인은 본 계약의 청약 이전에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시간 방문·전화권유 판매를 요청하였습니다.
 - ※ 본 확인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유지를 위해 야간 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의 방문·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TOP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전화 : 1588-5959

© MG NON-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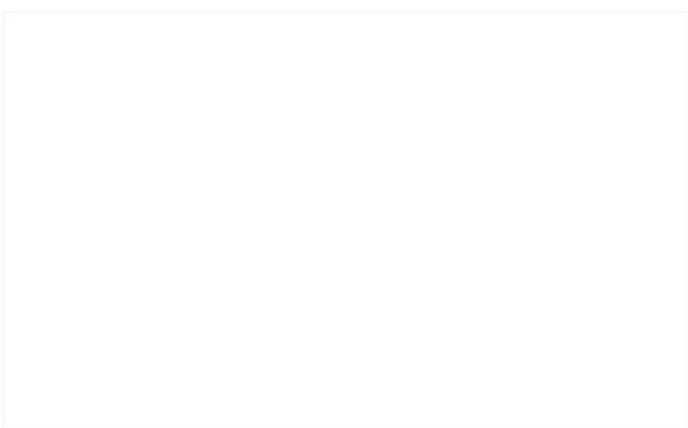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보험료납부 관련사항 및 전자서명)

휴대폰 전자서명

휴대폰 전자서명 동의

- 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 및 이해 하였음을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 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다시하기

- 귀하의 모집인은 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것에 대하여 2025.02.11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휴대폰 전자서명



휴대폰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모집인을 통해 계약 체결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손해보험]

항상 고객님의만 바라보는 MG손해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약서, 약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서 다운로드

약관 다운로드

계약 체결 후 청약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 보험계약 상세조회 화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청약서 및 약관을 메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E-MAIL 수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E-MAIL 수신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동의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료(전자문서)작성절차

-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료 작성 전 대리서명 및 자기부인 방식을 위한 본인여부 확인
- 2)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료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 3) 전자문서로 제공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자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전자서명
- 4)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보험계약자료 확인

닫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동의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효력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료 작성을 통한 보험계약체결은 서면에 의한 보험계약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닫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동의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계약자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부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계약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후 당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에서 전자문서, 계약처리단계 및 담당자 정보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증표제시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확인하였습니까? 금융상품판매자가 법인_보험대리점인 경우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에 게시된 '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고, 개인_보험설계사인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보험모집종사자 권한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 듣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가입제안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실제소유자확인

- 본 상품 계약자는 본 계약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실제소유자의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항으로 실제소유자란 계약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확인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전동휠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상시적 이용에 관한사항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상시적 이용에 관한사항]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 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항에 반영 ** 됩니다.
 - *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보행자'이며 보도로 통행해야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서 제외
 - ** 표준약관 (통지의무 : 계약후 알릴의무) 및 표준사업방법서 (고지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나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확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보험가입내역 조회

- 보험가입자,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을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약서 주요사항 확인

▶ 이클린보험서비스

- 모집자의 경력,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를 등 주요정보는 이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 홈페이지에서 고유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 전체 동의함 전체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 보험금 지급·심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순보험료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업무 포함) - 가입한 보험계약 상담, 법률 및 국제 협약 등의 의무 이행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주요사항 비교 설명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적용 대상에 한함) - 건강등급산정(보험료 할인)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p>

닫기

2. 제공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 전체 동의함 전체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소방방재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등 법령상 의무수행 지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 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진단 업체, 계약적부조사업체, 헬스케어서비스업체 등)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수행)
--------	--

닫기

3. 조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 전체 동의함 전체 동의하지 않음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그레이스 헬스체인(GHC)
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할 및 갹신 포함), 보험 가입 한도 조회,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 확인,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및 고액·다수 계약 확인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기존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할 및 갹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적용대상에 한함) - 건강등급산정(보험료 할인),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보험거래가 개시되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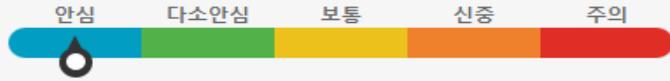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래 내용에 전체 동의함 전체 동의하지 않음

* 본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959)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 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링크\(클릭\)](#) 참조)

▶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최대 5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최대 2년 (단, 비대면채널은 동의일로부터 최대 3년)
거부권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2. 제공에 관한 사항

아래 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959)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 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링크\(클릭\)](#) 참조)

제공받는 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단, 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상품·서비스 소개 및 서비스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최대 5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최대 2년

닫기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 무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상기 계약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등과 금지행위에 대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의 고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 ② 1사 전속 대리점·설계사 해당여부
- ③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금융상품판매업자)
- ⑤ 보험료외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⑥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
- ⑦ 대리점 간 재위탁 시 위탁한 대리점의 명의 및 업무
- ⑧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의 및 법령등록여부
- ⑨ 정해진 수수료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
- ⑩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⑪ 설계사의 이력·불완전판매비율·계약유지율·과태료 처분 등 법적처분여부를 이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⑫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 ⑬ (법인)표지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게시
- ⑭ (개인)증표를 소비자에게 제시
- ※ 표지 또는 증표는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공통 확인사항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기본계약·특약별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기본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가. 보험계약의 개요 / 나. 특약별 지급 제한사유 참조

예 아니오

·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참조

예 아니오

·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없거나 또는 적을 수 있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라.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예 아니오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면제),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참조

예 아니오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상품 특성 : 무/저 해약환급형 상품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이 상품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이 상품과 함께 보장내용이 동일한 일반형(표준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비교하여 안내 받으셨습니까?

※ 해지미지급형 상품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참조

예 아니오

닫기

TM 전자서명 표준안

구성 화면 (기타 팝업상세)

☁️ 상품 특성 : 순수보장성 상품 ×

-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해약환급금미지급형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참조
- 예 아니오

닫기

☁️ 계약서류 수령확인 ×

이 수령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청약서부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지체없이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닫기